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79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인적용역제공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등(임광현의 원안, 진성준의원안)	3

I. 개요

1.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79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광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1.

(3) 회 부 일 : 2024. 10.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지급하는 소득의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되는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된 금액은 2022년에 269만 명에게 6,515억원, 2023년에는 349만명에 8,502억원 등으로 2년 간 약 1조5천억 원이 돌려 지급되었음.

이처럼 환급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1962년부터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에서 의사, 한의사 등 의료사업자와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방지를 위해 1998년부터 3%로 높였기 때문이며, 해당 원천징수세율이 저소득자인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정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정부는 실제 세입 증대는 없이 오히려 세금 환급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여야 하고 환급시스템 개발 등으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세무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는 세금 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출하는 등 국민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배달라이더 등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제공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당초대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영세한 플랫폼노동자(「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나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환급신청)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5항 및 제129조제1항제3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인적용역제공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등(임광현 의원안, 진성준의원안)

현 행	임광현의원안	진성준의원안
☐ 원천징수세율(제129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3% * 단, 프로스포츠 외국인 용병: 20% ☐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세액 확정기한(제80조) ○ 대상 및 결정 기한 -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일 부터 1년* * 시행령 제142조제2항	☐ <u>인적용역제공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u>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 의료보건 용역 등: 3% - 인적용역: 1% * 단, 프로스포츠 외국인 용병: 20% ☐ <u>영세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 미이행시 신고기일부터 3개월 내 결정</u> ○ 대상 및 결정 기한 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일 부터 3개월 ② 그 외: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일 부터 1년	☐ 원천징수세율(제129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현행과 같음) ☐ <u>영세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 미이행시 신고기일부터 3개월 내 결정</u> ○ 대상 및 결정 기한 ① 제127조제1항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일 부터 3개월 ② 그 외: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일 부터 1년

* 임광현의원안 2024. 10. 21. 제출(의안번호 4795), 진성준의원안 2024. 10. 29. 제출(의안번호 4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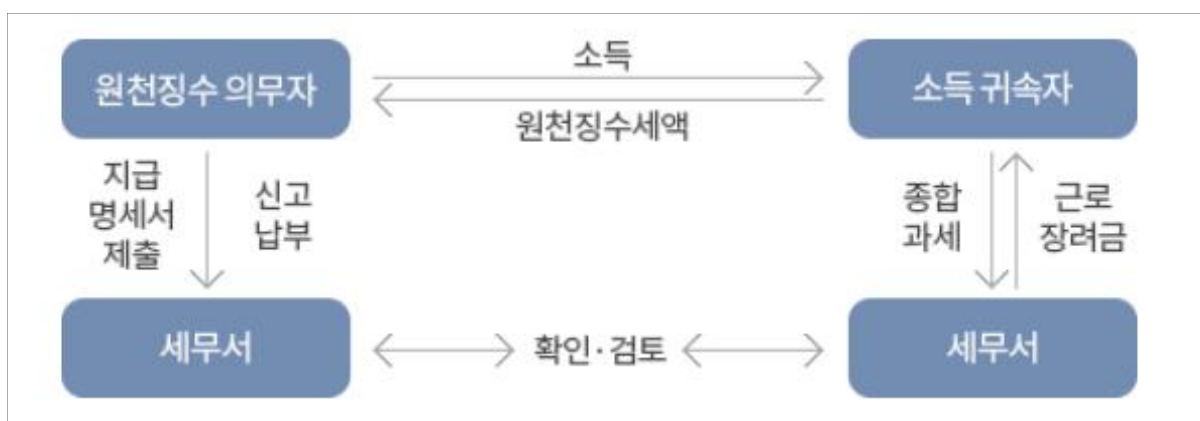
☐ 2건의 개정안은 영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초과징수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임광현의원안은 인적용역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진성준의원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임광현의원안은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제공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1%로 인하하려는 것임.

- 「소득세법」은 ① 세원의 탈루를 최소화하고 ② 징수 및 납세편의를 도모하며, ③ 과세자료를 파악하고, ④ 국가재정수요의 적기 조달을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소득 귀속자)에 소득을 지급할 때 조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제도를 두고 있음.

[원천징수 제도 개요]



자료: 국세청

현행법은 이와 같은 원천징수의 세율을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그 특

성을 감안하여 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의료보건 용역과 저술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¹⁾의 경우 1998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계속 3%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종합소득과세표준 등의 확정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²⁾, 국세청에 따르면 행정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주로 추가 납부가 필요한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세액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제공자의 사업

1)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2.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1%로 하향조정하고
(임광현의원안),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임광현의원안)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직전
및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에 미달하는 자(진성준의원안) 등 영세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
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소득세 환급금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의 불필요한 납세협력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한 결과 원천징수한 既납부세액이 실제 부담
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함.

그런데 세무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환급액이 있
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환급금의
존재를 아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절차를 정확하게 몰라 납세협
력비용(세무대리 수수료 10%~20%)을 부담하며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인적용역 소득자가 직접 환급신
청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
당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할 경우 불필요한 세무

대리 수수료 지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최종 결정세액 대비 높은 원천징수세율로 인해 환급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고, 초과징수액의 환급시스템 개발 등 세수 확충에는 영향이 없는 업무에 국세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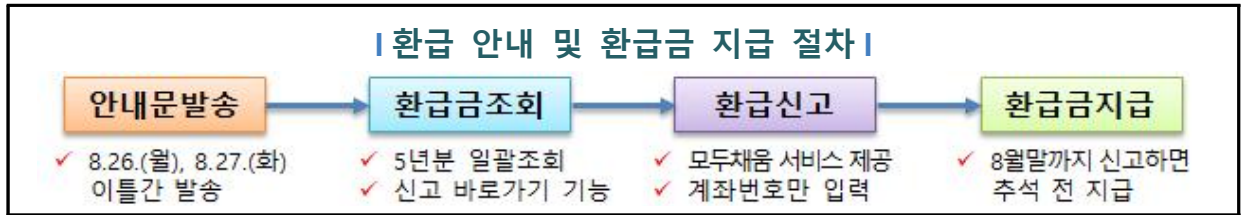
국세청은 2022년 인적용역 소득자 269만명을 대상으로 6,515억원의 환급금을, 2023년에는 349만명에 대하여 8,502억원의 환급금을 지급하였음³⁾.

또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370만명에게 1조 256억원의 환급금을 반환하였고, 2024년 8월부터 매달 ② 2019년~2023년 귀속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35만명(환급금 1,792억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환급 안내문 발송, 원클릭 신고를 통한 환급금 지급 등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과 함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홈택스 고도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⁴⁾.

3)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1.5조원 찾아줬다.」, 국세청 보도자료, 2023.12.30.

4) 「국세청이 직접 최대 5년간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2024.8.26.

[2024년도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절차 및 실적]



환급신고 안내		
신고시기	인원	세액
'24.5월 (정기신고)	460만명	1조 350억원
'24.8월 (기한후신고)	135만명	1,792억원

환급금 수령액		
지급시기	인원	세액
'24.6월	370만명	1조 256억원
'24.9월*	9만명	110억원*

주: 8월말까지 신고분에 대해 추석 전 환급금 지급(기한후신고 지속 접수 중)

자료: 국세청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환급금 확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족한 행정인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인 5월 31일부터 3개월 이후인 8월 31일 이전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해야 함.

그런데 과세표준확정신고 사항의 오류 정정 및 시스템 입력에만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국세청의 의견을 감안할 때 매년 수백만명에 달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을 지금과 동일한 인력으로 3개월 이내에 확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기 환급을 위한 과세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거나 자동환급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일반적으로 소득세 환급보다 미납액 징수에 따른 조세저항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같이 원천징수 세율을 1%로 인하하면 종합소득세 환급자 일부가 추가 납부의무자로 변경될 수 있고, 환급금을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한 이후 새로운 과세자료 등이 발견될 경우 환급금을 재추징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현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미신고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⁵⁾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환급신청)를 하지 않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1년내에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1조⁶⁾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가 초과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국세 및 강제징수비 충당분을 제외한 금액을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5)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 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 3. (생략)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화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관청의 초과
징수액 환급의무는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154
